

성과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22. 12. 27.

개 정 : 2025. 8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, 연구 등에 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·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및 대학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성과관리 내용) 대학성과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정보공시 지표
2. 교육, 연구 등 분야별 성과지표
3. 교육만족도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
4. 학과, 대학원, 행정부서별 성과지표
5. 기타 대학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성과관리 운영) 대학 교육의 질 및 성과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주관부서 및 업무) ① 대학성과관리 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주관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시행부서는 따로 둘 수 있다.

1.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
2.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성과에 관한 분석 및 관리
3.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 평가
4. 학생 핵심역량 진단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
5. 교육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에 관한 분석 및 관리
6.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관한 분석 및 관리
7. 대학교육 성과 데이터의 통계 분석 및 데이터 총괄 관리
8. 기타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대학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⑥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교에서 시행한 각종 교육 및 연구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
2. 본교에서 시행한 각종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7조(운영계획 수립) 시행부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의 계획을 수립 후 주관부서에 보고한다.

제8조(시행 및 결과분석) 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를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
2. 교육만족도조사
3. 핵심역량진단조사
4. 대학 성과관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
5. 그 외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

제9조(결과보고) 주관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개선 과제 및 후속 조치 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결과공개) 주관부서는 조사의 최종결과를 교내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학의 구성원에게 공개하고, 본교의 성과 제고 및 발전에 활용한다.

제11조(개선과제 선정 및 추진) ① 주관부서는 최종결과 및 후속조치내용을 각 관련부서에 통보한다.

② 교육만족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은 표1에 따른다. 단, 위원장 및 위원회 과반 이상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수 기준과 관계없이 개선할 수 있다.

<표1> 개선과제 도출 기준표

점수 기준	조치 구분
3.5 이상	현행 유지 및 확대
3.0 이상 3.5 미만	개선 검토 필요
3.0 미만	개선 시급 및 우선조치 필요

③ 각 관련부서는 매 학기말 후속조치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
④ 주관부서는 후속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개선과제 추진 및 시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- 제12조(부서평가 반영)** ① 학생의 만족도 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② 선정된 개선과제는 부서평가의 평가지표에 포함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